



중국 '신(新) 국가 안전법' 제정과 사이버 규제의 강화

문혜정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중국공산당 창설 94주년과 홍콩 반환 18주년을 맞이한 2015년 7월 1일 중국 정부는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제정하였다.¹⁾ 신(新) 국가안전법 제1조는 “국가안전을 유지하고, 인민민주독재 정권 및 중국 특색을 갖춘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며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시키기 위해 동법을 제정하였다”고 법률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²⁾ 신 국가안전법은 2014년 중국 정부가 창설한 중앙국가안전위원회의 활동 근거가 되는 법으로, 정치, 경제 및 군사, 인터넷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한편, 우주, 심해, 극지방에서의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정권의 전복, 국가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영토 보전, 경제 질서의 유지, 자원 확보, 인터넷 규제 강화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전법의 준수는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전 중국인 공동의 의무”라고 하면서, 홍콩과 마카오는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신 국가안전법을 통해 인터넷 주권³⁾ 개념을 제시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명문화하였다. 이는 향후 중국 내에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하여 국가와 개인 간 법익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판단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어 주목된다.

본고는 중국의 신 국가안전법 제정 배경 및 경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인터넷 강화 규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및 해외 언론의 보도 내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신 국가안전법은 2015년 7월 1일 개최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찬성 154표, 반대 0표, 기권 1표) 같은 날 공포, 시행되었다.

2) 신 국가안전법 제1조.

3) 통상 인터넷 주권은 IP와 DNS 서버의 통제권 등을 의미한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 등에서 인터넷 주권은 국가적 차원에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권한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참조: 『매경이코노미』, 2015. 12. 20. 최진홍, “중국의 인터넷 주권 화두, 위선과 위선의 대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661>).

신 국가안전법 제정 배경 및 경과

최근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보다 강력한 국가안전보장 체계의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첩보 활동 사실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보안 관련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1월 24일 중국판 국가안보국(NSA)이라 불리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를 창설하였다.⁴⁾ 2014년 4월 개최된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내세우며, 정치, 문화, 군사, 경제, 첨단기술,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가안전을 수호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⁵⁾ 더불어 중국 정부는 보다 강력한 국가안전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1993년 제정된 구 국가안전법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된다.

2015년 7월 1일 새롭게 제정된 신 국가안전법의 성립 과정은 2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2014년 11월 1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 11차 회의에서 기존의 국가안전법⁶⁾의 주요 내용을 계승한 반스파이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1993년 제정된 구 국가안전법을 폐지하였다.⁷⁾

4) 2014년 1월 24일 중공중앙정치국(中国共产党中央政治局, Politburo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주석으로 하고,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와 장더강(张德江)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주석으로 하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中央国家安全委员会, Central Committee for State Security)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5) 『人民网』, 2014. 4. 16. 沈丁立, “中央国家安全委员会首次会议发出‘两大信号’”, <http://me2.do/x5jTpanA>(검색일: 2016. 2. 29.)

6) 구 국가안전법은 1993년 제정되었고, 총 34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반 스파이 활동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였다.

7) 반 스파이법(反间谍法, 主席令第16号、2014年11月1日公布、同日施行) 제정과 함께 1993년 제정된 구 국가안전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5년 7월 1일 신 국가안전법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신 국가안전법은 구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안전의 개념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



2015. 7. 1. 신 국가안전법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 되었음을 보도한 신화사의 뉴스화면 캡처 (출처: 江苏警官学院保密办网站, 2015.7.10. “新国家安全法实施 明确建设网络与信息安全保障体系”, <http://baomi.site.jspi.cn/Item/Show.asp?m=1&d=2078>)

국가안전의 범위를 비전통적 안전보장의 영역까지 폭넓게 규정

신 국가안전법은 1장 총칙, 2장 국가안전의 유지임무, 3장 국가안전의 유지책임, 4장 국가의 안전제도, 5장 국가안전보장, 6장 공민, 조직의 의무 및 권리, 7장 부칙 등 총 7장 8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법 제2조에서는 국가의 안전을 “국가의 정권, 주권, 통일 및 영토보전, 인민의 복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하여 상대적인 위기 없이 내외에서 위협을 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그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⁹⁾ 이처

8) 신 국가안전법의 상세 내용은 다음 사이트(<http://me2.do/GBbUt8bv>) 참조.

9) 신 국가안전법 제2조.



럼 국가안전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은 중국 정부가 “국가안전”의 범위에 전통적 안전보장 영역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안전보장 영역을 포함시켜 대외적인 안전과 함께 중국 내 안정성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¹⁰⁾ 중국 정법대 마화이더(马怀德) 부총장은 “신 국가안전법은 인터넷상 국가의 주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의 사이버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¹¹⁾

이처럼 중국이 사이버 보안 및 인터넷 규제에 적극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방대해지면서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둘째,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한 반정부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의 배경으로는 중국의 젊은 층이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 정부는 이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민 및 조직의 국가안전유지의무 및 위반 시 처벌규정

신 국가안전법 6장에서는 공민 및 조직이 준수해야 하는 국가안전유지의무를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동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국 공민 및 조직은 ① 헌법과 법률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② 국가안전에 위해가 되는 활동의 단서를 발견 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③ 국가안전에 위해가 되는 활동에 대해서 알게 된 증거를 사실대로 말하고, ④ 국가안전 업무를 위해서 조력해야 하며, ⑤ 국가안전기관, 경찰기관 및 관련군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지원·협력하고, ⑥ 알게 된 국가기밀을 지켜야 하며, ⑦ 법률 및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신 국가안전법은 국가안전 유지의무를 이와 같이 규정하면서도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단지 제13조와,¹²⁾ 제15조에서 국가안전 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만 정하고 있어 향후 국가안전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행정법규, 부문법규 등이 제정되면 처벌 수위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가안전법의 적용대상에는 중국에 진출해있는 해외기업들도 포함되므로 관련 법령의 제정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 정부, 인터넷상에서도 ‘국가의 주권’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

신 국가안전법 제25조는 사이버공격 및 네트워크를 통한 기밀누설, 온라인상 불법 유휘정보 배포행위 등 온라인상 범죄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국민의 주권과 안전 및 이익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인터넷상 정보안전보장체계를 구축

10) 신 국가안전법 제8조.

11) 『中华网』, 2015. 7. 2. “新国家安全法首次明确‘网络空间主权’概念”, <http://me2.do/FJT5Rl8F>(검색일: 2016. 2. 29.)

12) 신 국가안전법 제13조 “국가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의 관계자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사사롭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개인이나 조직이 동법 및 유관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안전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가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하여 인터넷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상에서도 국가의 주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¹³⁾ 중국 정부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앞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높은 수준의 통제와 검열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내부적으로는 국가 체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에 진출해있는 해외 IT기업들을 통제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 내 체제의 안전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신 국가안전법의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동법 제15조는 “인민민주주의 전제정권을 전복하려고 하거나, 전복하려고 선동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 및 저지하고, 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당독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¹⁴⁾ 따라서, 동 조항에서 의미하는 “인민민주주의 전제 정권”이란 중국 공산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만약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국가 안보를 위협에 처하게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동 조항에 근거하여 국내의 모든 사이버 공격이나 인터넷상 민주주의의 계몽 및 시위, 사회운동과 관련한 정보를 차단하거나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동 조항은 사전 방지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서 실제로 민주화를 선동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단속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일부 전문가들은 새 국가안전법의 시행으로 중국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IT기업에 대한 통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 조항을 통해 중국 정부는 주요 인터넷망 인프라와 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므로 중국 정부가 기업 시스템에 백 도어(back door)를 만들어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사용자의 데이터, 기업의 지적 재산에도 개입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신 국가안전법 제정에 대한 해외 언론의 반응

신 국가안전법과 중국 정부의 인터넷 주권 개념에 대해 해외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 국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개념이 모호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5년 9월 7일 자이드 라이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중국의 신 국가안전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동법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⁵⁾

또한, 해외언론은 중국 정부의 해외 IT 기업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3) 『新华网』, 2015. 7. 21. “《国家安全法》为依据全面维护网络空间安全”, <http://me2.do/Gq6jFLwy>(검색일: 2016. 2. 29.)

14) 중국 정부는 공산당 이외에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중국 8개 정당인 주당파를 인정하고 있다. 8대 민주당파는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 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지공당, 구 삼학사, 타이완민주자치동맹이 해당한다. 이들 8개의 민주당파는 중국인민정치 협상회의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산당의 정치활동에 협력한다.

15) 『UN News Centre』, 2015. 7. 9. “UN rights chief concerned by ‘broad scope’ of China’s new security law”, <http://me2.do/FhTH4KhC>(검색일: 2016. 2. 29.)



뉴욕타임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임에 틀림없지만, 중국 정부가 기업의 시스템에 백 도어(back door)를 만들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될 경우 기업의 기밀 유출로 직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헌법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의 안정을 확보할 의무’

중국 헌법 제35조는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여행·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51조에서 제54조는 국민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의 안정을 확보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사회·집단의 이익과 기타 국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¹⁶⁾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¹⁷⁾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기밀을 지키며, 공공재산을 애호하고, 노동기율과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여야 한다.¹⁸⁾ 또한, 국민에게는 조국의 안전·영예·이익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¹⁹⁾ 이러한 헌법상 국민의 의무는 중국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인터넷상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

16) 중국 헌법 제51조.
17) 중국 헌법 제52조.
18) 중국 헌법 제53조.
19) 중국 헌법 제54조.



2015년 7월 9일 실시된 외교부 화춘잉(华春莹) 대변인의 기자회견 장면 (출처: CCTV, 2015. 7. 9. “UN의 국민의 자유 제한 발언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 <http://news.cntv.cn/2015/07/09/ARTI1436450164819156.shtml>)

열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과도한 검열과 감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2015년 7월 9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화춘잉(华春莹) 대변인은 신 국가안전법의 핵심은 ‘인민 안전’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안보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근거로 신 국가안전법 제1조의 ‘인민의 근본이익 보호’, 제7조의 ‘인권의 존중과 보장, 합법적인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규정을 들었다. 또, 일부 조항에는 국가가 국민과 조직의 안보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고 밝혔다.

신 국가안전법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및 방침

신 국가안전법 시행 이후, 중국 관영매체 신화망(新华网)은 신 국가안전법은 국가안전이 직면한 새로운 정세와 과제에 적응하기 위해 종합적 국가안전관을 법률의 형식으로 확립한 중요한 조치라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명확히 법 제도화

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의 자유나 기업의 장기적인 유지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²⁰⁾ 또한, 중국정부가 운영하는 종합 언론 사이트 중국망(中国网) 일본어판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중동을 휩쓸었던 ‘아랍의 봄’과 스노든 사건을 예로 들면서 국가의 사회 동란은 전파 수단이 격변할 때 갑자기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 인터넷이 위와 같은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적 움직임을 가속화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²¹⁾

또,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정수나(鄭淑娜) 부주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내에서 인터넷 공간이나 정보기기의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서구 국가들이 자국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 제정한 법률과 같은 취지에서 제정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언제나 전 세계에 열린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중국 법률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²²⁾

중국 정보기술보안평가센터, 미국 IT기업들에 ‘컴플라이언스 승낙’ 요구

신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2015년 9월 중국 정보기술보안평가센터(中国信息安全测评中心)는

애플, 구글, IBM을 포함한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에게 중국식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컴플라이언스 승낙’을 요구하였다. 중국 정보기술보안평가센터(中国信息安全测评中心)가 미국 기업에 요구한 보안 준수 규정의 정식 명칭은 ‘사용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기술제품 공급자의 승낙서’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 Supplier Declaration of Commitment to Protect User Security)²³⁾이며,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약서 앞부분에는 중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을 것, 고객 정보를 변환하지 않을 것, 고객 정보를 국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사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이용 규약에 동의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나 서약서 뒷부분에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감독활동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상에도 주권이 존재한다는 신 국가안전법의 내용과 상통하는 조치로 중국 정부가 백도어를 통해 기업의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한 사안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해외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기업의 서비스를 검열하고 고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기밀정보가 유출되거나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당국자는 승낙서는 중국 정보기술보안평가센터가 중국에 진출해있는 해외기업에 송부한 의견수렴서로 국내법과 국제관습에 기초한 것일 뿐이라는

20) 『新华网』, 2015. 7. 2. “专家解读新国家安全法：首次以法律形式提出“维护国家网络空间主权”, <http://me2.do/xWc5dGcY> (검색일: 2016. 2. 29.)

21) 『中国网(일본어판)』, 2015. 7. 10., “新「国家安全法」中国は对外開放をペースダウンさせるのか”, <http://me2.do/5CdckRrH>(검색일: 2016. 2. 29.)

22) 『中国网』, 2015. 7. 1. “全国人大通过国家安全法回应何种情况下适用于香港”, http://news.ifeng.com/a/20150701/44080924_0.shtml(검색일: 2016. 2. 29.)

23) 『뉴욕타임스』, 2015. 9. 16. “The Pledge China Wants Tech Companies to Sign”, <http://me2.do/GXMfIzpj> (검색일: 2016. 2. 29.)



입장을 밝혔다.²⁴⁾

인터넷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 '네트워크 안전법'²⁵⁾ 제정 추진

2015년 7월 5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의 초안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2015년 8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네트워크 안전법의 초안은 총 7장 6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법안의 목적은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과 인터넷 사용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⁶⁾ 또 해당 법안은 네트워크 보안과 안전, 감독 및 경고, 긴급조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인터넷 실명제 및 유사시 정부가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전 신분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사용자가 신분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⁷⁾ 아울러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허가를 거쳐 일부 지역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²⁸⁾ 앞서 제정된



'사용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기술제품 공급자의 승낙서'의 내용을 공개한 뉴욕타임스 보도화면 캡처 (출처 : 『뉴욕타임스』, "The Pledge China Wants Tech Companies to Sign", <http://me2.do/GYkX3ylp>)

신 국가안전법에서는 위반 시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네트워크 안전법의 경우 위반 시 처벌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동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한국에도 도입된 적이 있다.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지만, 시행 5년만인 2012년에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폐지되었다.²⁹⁾ 다만, 공직선거법상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 중의 실명확인 의무³⁰⁾는 남아있다. 그러나 해당 부분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폐지되어야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제정 및 폐지의 과정과 비교해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정부가 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

24) 『中国新闻网』, 2015. 9. 18. "中国要求美企签承诺书中方称报道不实", <http://me2.do/5SoXVUcZ> (검색일: 2016. 2. 29.)

25) 네트워크안전법 (초안)의 상세 내용은 다음 사이트 (<http://me2.do/FCKuYex6>) 참조.

26) 네트워크안전법 (초안) 제1조.

27) 네트워크안전법 (초안) 제20조.

28) 네트워크안전법 (초안) 제50조.

29) 헌법재판소 2012. 8. 23.선고 2010헌마47 결정.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기사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络安全法) 초안을 대중에게 공개한 이후 해외 언론들은 인터넷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보도하기도 했다. 예컨대, 일본 언론에서는 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초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나 ‘비상시 인터넷 제한조치’와 관련된 조항들이 언론 통제를 강화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³¹⁾


한편, 2015년 12월 9일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루웨이(鲁炜) 주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을 위한 입법 기관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터넷상 단속을 한층 더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정부의 네트워크 안전법 제정이 인터넷 통제와 검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사회적 특색에 맞는 인터넷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인터넷상 언론의 자유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³²⁾

IT 기업 신 국가안전법 관련 동향에 주목해야

한국도 얼마 전 ‘테러방지법’ 제정을 두고 국가 안보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과, 개인의 충분한 권리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신 국가안전법은 국

내 상황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신 국가안전법은 국가안전수호에 무게를 두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중 FTA 체결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 국가안전법의 제정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IT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도 신 국가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31) 『record china』, 2015. 7. 14. “中国がネット安全法の草案を公開、実名性や非常時のアクセス制限などで統制強まる恐れ—英メディア”, <http://me2.do/GM7UqFs6> (검색일: 2016. 3. 20.)

32) 『浙江在线』, 2015. 12. 9. “欢迎更多国家加入“朋友圈”国家网信办主任鲁炜答记者问”, <http://me2.do/GGJZUDYL> (검색일: 2016. 2. 29.)